

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

1. 연결모법인 기본사항

① 법 인 명		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	
③ 대표자 성명		④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	

2. 연결자법인 명세

⑤ 번호	⑥법인명	⑦ 사업자 등록번호	⑧ 사업연도	⑨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	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(%)		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	
					⑩ 직접출자 비율	⑪ 간접출자 비율		
			. . . ~ . . .				여	부
			. . . ~ . . .				여	부
			. . . ~ . . .				여	부
			. . . ~ . . .				여	부
			. . . ~ . . .				여	부
			. . . ~ . . .				여	부
			. . . ~ . . .				여	부
			. . . ~ . . .				여	부

3.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으려는 사업연도

. . . . ~

4.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

가.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 이력

⑬ 승인이 취소된 날		⑭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	 ~
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나.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이력

⑮ 포기 신고일		⑯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	 ~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의13제1항 또는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연결모법인

(서명 또는 인)

연결자법인

(서명 또는 인)

연결자법인

(서명 또는 인)

연결자법인

(서명 또는 인)

연결자법인

(서명 또는 인)

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

첨부서류 : 1. 연결모법인의 주요 주주상황(부표1), 2.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(부표2)

작성 방법

- ※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⑧ 사업연도란: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각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(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의 사업연도)를 적습니다.
 - ⑨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: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,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(연결자법인의 연결지배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우리스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)을 적습니다.
 - ⑩ 직접출자비율란: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.
 - ⑪ 간접출자비율란: 모법인의 다른 연결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.
 -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: 「법인세법」 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아야 하는 법인은 "여"란에 "○"표시 하고, 그렇지 않은 법인은 "부"란에 "○"표시 합니다.
 - "4.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"란: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은 연결법인이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 - ⑯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란: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던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.
 -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"취소된 날이 속하는 날"이 속하는 사업연도(포기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)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상황

1. 연결모법인명 등

① 법 인 명		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		③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	
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	--

2.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등의 주식 수

④ 번호	⑤ 성 명 (법인명)	⑥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⑦ 보유주식수 또는 출자금액	⑧ 출자비율(⑦/③) (%)

※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7항에서 정하는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의 보유지분 현황을 작성합니다.
※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의 출자비율이 법인세 신고시 최종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
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

1. 연결자법인

①법 인 명		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		③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	
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	--

2.연결자법인의 연결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주식 등 (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0호의2다목)

④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	⑤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	⑥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
⑦ 합계(④+⑤+⑥)	⑧ 발행주식총수 중에 차지하는 비율(⑦/③)	⑨ 출자비율계산시 기준주식수(③-⑦) (⑧의 비율이 5%미만인 경우에 한함)

3. 연결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명세